

2017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운용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98
----------	------

2016년 12월 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I .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6. 11. 7.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회부일자 : 2016. 11. 8.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16. 12. 12.)  
- 안전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2016. 12. 21.)  
- 원안가결

## II . 제안설명 요지(교육행정국장 이무수)

### 1. 제안이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로 생명·신체에 입은 피해 지원을 위해 설치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2017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임

## 2. 주요내용

- 2017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기본방향
  - 첫째,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보호기능을 강화
  - 둘째,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 셋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임
- 수입계획은 총 177억 9,900만원으로
  - 공제료 수입 56억 7,300만원,
  - 공제급여 등 교육청 지원금 18억 5,700만원,
  - 수익사업 전입금 1억 2,000만원,
  - 이자 및 구상금 수입 1억 9,600만원,
  - 전년도 이월금 99억 5,300만원임
- 지출계획은 총 177억 9,900만원으로
  - 공제 및 예방 사업비 60억 100만원,
  - 피해자 상담 및 폭력피해 지원 2억 8,800만원,
  - 인건비 등 운영경비 13억 2,500만원,
  - 차기 이월금은 101억 8,500만원임

## Ⅲ.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전문위원 엄지운)

### 1. 개요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1) 및 같은 법 제54조 제1항2)에 따라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을 교

---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총당하기 위하여 학교 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공제회가 관리·운용한다.

육감이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영하고 있음

〈표 3-1〉 기금현황

기금명	설치연도	근거법령	설치목적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200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공제급여 충당

2. 기금총괄

○ 2017년도말 조성액은 101억 8,500만원이며, 2017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가감하여 2016년도말 조성액(99억 5,400만원)보다 2.3%, 2억 3,200만원 증가됨

〈표 3-1〉 2017년도 공제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2016년도말 조성현재액 (A)	2017년도		2017년도말 조성현재액 (B=A+㉠-㉡)	증 감	
		수입㉠	지출㉡		금액 (C=B-A)	비율 (C/A)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9,954	7,846	7,614	10,185	232	2.3

○ 2017년도 기금수지총액은 177억 9,900만원으로 2016년도 (157억 1,200만원) 대비 13.3%, 20억 8,700만원 증가함

〈표 3-2〉 2017년도 공제기금 수지 총괄

(단위 : 백만원, %)

수입계					지출계				
항목	2017년	2016년	증 감		항목	2017년	2016년	증 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계	17,799	15,712	2,087	13.3	합계	17,799	15,712	2,087	13.3
전입금	5,672	5,752	△79	△1.4	비용자성사업비	6,289	8,104	△1,815	△22.4
보조금	1,857	12	1,845	15,375.0	인력운영비	929	814	115	14.1
예치금회수 (잔가입금)	9,954	9,644	310	3.2	기본경비	396	441	△45	△10.2
이자수입	146	140	6	4.3	예치금 (차가입금)	10,185	6,353	3,832	60.3
기타수입	170	164	6	3.7					

### 3. 기금수지현황

#### 1) 수입계획

- 2017년도 수입계획은 177억 9,900만원으로 2016년도말 기금 조성액 99억 5,400만원을 포함하여 공제로 수입, 보조금(지원금), 소방수익, 학교폭력구상금회수, 이자수입 등 2017년도 수입금 78억 4,600만원으로 구성됨

〈표 3-3〉 2017년도 공제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

항목	세부내역	2017년도(A)		2016년도(B)	증 감	
			구성비		금액(C=A-B)	비율(C/B)
계		17,799	100.0	15,712	2,087	13.3
전 입 금	소 계	5,672	31.9	5,752	△80	△1.4
	공제로 수입	5,672	31.9	5,692	△20	△0.4
	교육금고기부금	0	0.0	60	△60	△100.0
보 조 금	소 계	1,857	10.4	12	1,845	15,375.0
	공제급여 지원금	1,672	9.4	0	1,672	순증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로 지원금	18	0.1	12	6	50.0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 지원금	168	0.9	0	168	순증
예치금 회수	전기 이월금	9,954	55.9	9,644	310	3.2
이자수입	이자수입	146	0.8	140	6	4.3
기타수입	소계	170	1.0	164	6	3.7
	소방수익	120	0.7	120	0	0.0
	학교폭력구상금회수	50	0.3	44	6	13.6

- 공제로 수입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3)

3)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의 의무가입자인 학교장이 납부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으로

- 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에서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공제로 산정기준<sup>4)</sup>에 근거하여 학교안전사고 발생 추이, 공제급여의 지급실적,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제로 단가를 결정하는 바,
- 2017년도에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과 동일하게 징수할 계획으로 공제로 단가는 평균 295원 인상되었으나, 학생수 감소(△55,917명)로 공제로 수입은 2016년 대비 △0.4%, △2,000만원 감소함

〈표 3-4〉 공제로 수입 및 학생수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명)

연 도	당해연도 수입(A)		당해연도 공제로 수입(B)			학생수 (산출내역 기준)		공제로 단가 평균 (원)	
		전년대비 증감		구성비 (B/A)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
2017	7,846	1,778	5,672	72.3	△20	1,053,468	△55,917	5,165	295
2016	6,068	△54	5,692	93.8	247	1,109,385	△17,153	4,870	387
2015	6,122	-	5,445	88.9	-	1,126,538	-	4,483	-

주) 2016~2017년도는 기금운용계획서 기준이며, 2015년도는 결산서 기준임

- 공제로 수입이 당해연도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제기금의 수입 구조상 학생수의 감소는 공제기금 재정난을 악화시킬 요인이 될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4)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로 산정기준 고시(학생1인당 기준 공제로)

(단위 : 원, %)

구 분	유	초	중	고	평균
2017년도	1,940	3,370	6,840	8,510	5,165
2016년도	1,940	3,160	6,360	8,020	4,870
증감액	0	210	480	490	295
증감율	0	6.6	7.5	6.1	5.1

수 있는 바, 기금 관리·운용주체인 공제회에서는 이자수입, 지원금(기부금) 유치 등 다각적인 재원 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보조금**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입된 지원금 수입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3건의 지원금을 모두 기금수입에 편성하고 있음

〈표 3-5〉 교특회계 세출예산 중 공제회 지원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보조금 세부내역	지원근거	교특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			
		세부사업	과목	금액	소관부서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	재무회계관리	민간이전	18	교육재정과
공제급여 지원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재무회계관리	민간이전	1,672	교육재정과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 지원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학생생활지도 지원	민간이전	168	정책·안전 기획관

-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1,800만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5)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제료 지원금을 수입계획에 편성한 것임
- **공제급여 지원**(16억 7,200만원)과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 지원**(1억 6,800만원)은 2017년 신규 사업인 바,
- **공제급여 지원**(16억 7,200만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고액의 장해 및 유족급여 보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같은 법 제3조6)에 따른 교육비특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공제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학생인 피공제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제료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2. 생략  
3.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

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별회계 지원금을 수입계획에 편성한 것임

-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 지원**(1억 6,800만원)은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7)에 의하여 교육감의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이 의무화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8)에 의하여 공제회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심의 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바, 공제회의 피해자 상담지원과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지원금으로서 이를 수입계획에 편성한 것임
- **소방수익**은 1억 2,000만원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10)에 따라 공제회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소방안전점검사업에서 발생한 바, 이를 수입계획에 편성한 것임

- 
- 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상담 지원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한다.  
②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정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한다.(1~3호 생략)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을 상담 또는 심리적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1년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제회의 사업) ②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1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3(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2. 소독·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 2) 지출계획

- 2017년도 지출계획은 177억 9,900만원으로 예치금 101억 8,500만원을 포함하여 인력운영비(9억 3,000만원), 기본경비(3억 9,600만원) 및 비용자성사업비(62억 8,900만원)로 지출계획을 편성하고 있음

〈표 3-6〉 2017년도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

항목	세부내역	2017년도(A)		2016년도(B)	증 감		
			구성비		증감액(A-B)	증감률	
계		17,799	100.0	15,712	2,087	13.3	
비용자성사업비	소계	6,289	35.3	8,104	△1,815	△22.4	
	공제사업비	소계	5,793	32.5	7,754	△1,961	△25.3
		공제급여(사고보상비)	5,617	31.6	7,620	△2,003	△26.3
		소송및의료자문	146	0.8	146	0	0.0
		보상심사위원회	30	0.2	0	30	순증
	예방사업비	208	1.2	229	△21	△9.2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	167	0.9	0	167	순증	
	학교폭력피해지원	120	0.7	109	11	10.1	
인력운영비	소 계	930	5.2	814	116	14.3	
	급 여	790	4.4	680	110	16.2	
	수 당	140	0.8	134	6	4.5	
기본경비	소 계	396	2.2	441	△45	△10.2	
	업무추진비	30	0.2	30	0	0.0	
	일반운영비	366	2.1	411	△45	△10.9	
예치금	차기 이월금	10,185	57.2	6,353	3,832	60.3	

- **비용자성사업** 중 **보상심사위원회**는 2017년도에 신설된 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2016년에 이미 **기본경비(일반운영비)**에 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던 항목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11)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관련 법<sup>12)</sup>



에 따라 공제사업비로 전환한 것임

- 2016년 대비 순증(1억 6,700만원)된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 지원**은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sup>13)</sup>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sup>14)</sup>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지원과 상담 지원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공제회는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6월 정관을 개정<sup>15)</sup>한 것으로 확인됨
- 공제회가 제출한 지출계획 중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6,500만원)이 **기본경비(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바,
  -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교육부, 2016.9.)」<sup>16)</sup>에 따르면 인력운영경비는 인건비와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①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를 심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공제회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제회의 사업) ①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5.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1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상담 지원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한다.

②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정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한다.(1~3호 생략)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을 상담 또는 심리적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1년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5) 정관 변경 승인 통보(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12934, 2016. 6.24.)

16)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수립 기준(교육부, 2016.9.)」(p.156)

인력운영경비 : 인건비, 직급보조비, 공무원법정부담금, 기타직법정부담금,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인건비지원을 모두 합한 금액

법정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라고 하였으므로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은 **인력운영비(법정부담금)**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지난 10월 대법원은 지병이 있거나 본인 과실이 있을 경우, 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교안전법<sup>17)</sup> 시행령은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 제도가 안전사고로 인해 학생이 입은 피해를 직접 보전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도입되어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과실책임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모법인 학교안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피공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판결<sup>18)</sup>을 한 바,
  - 향후 공제급여 지급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기금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재원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회의 경비<sup>19)</sup>, 행사비 등 소모성경비에 대한 자체적인 절감방안을 마련하여 기금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IV. 심사결과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2.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3.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1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약칭

18)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사건

19) 지출계획상 공제회 회의경비 1회 단가는 50만원이나,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p.34)은 회의 시 생수 이외의 의례적인 차, 음료, 간식 등의 제공을 자제하고 있음

# 2017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의안 번호	1498
----------	------

제출연월일 : 2016년 11월 7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1. 제안이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입은 피해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2017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임.

## 2. 관련법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제53조

## 3. 주요내용

### 가.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기본방향

-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공제급여를 지급하며
- 학교폭력피해학생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 나. 2017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

### ○ 총괄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계	보조금	공제료 수입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고유 목적 사업비	인력 운영비 (인건비)	기본 경비 (운영비)	예치금
17,799,658	1,857,286	5,672,590	9,953,547	146,235	170,000	17,799,658	6,289,040	929,469	395,807	10,185,342

※ 보조금: 공제급여 지원금 +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 지원금

※ 기타수입: 수익사업(학교소방시설관리사업) 운영 수익금 + 학교폭력피해지원사업구상금

※ 고유목적사업비: 공제사업비 + 예방사업비 + 학교폭력피해지원비 +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비

### ○ 수입계획은 17,799,658천원으로

- 공제급여 지원금 1,672,000천원
-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17,706천원
-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 지원금 167,580천원
- 공제료수입 5,672,590천원
- 예치금 회수(전년도 이월금) 9,953,547천원
- 이자수입 146,235천원
- 수익사업 전입금 120,000천원
- 학교폭력피해지원 구상금 50,000천원임

### ○ 지출계획은 17,799,658천원으로

- 공제사업비 5,793,200천원
- 예방사업비 207,800천원
- 학교폭력피해지원 120,460천원
-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 167,580천원
- 인건비 929,469천원
- 운영비 395,807천원
- 차년도 예치금(차기 이월금)은 10,185,342천원임

2017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서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The 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 I. 기금운용계획 총괄

## 1. 기금개요

가. 설치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나. 설치연도 : 2007년

다. 기금의 조성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 등

라. 기금의 용도

- 1) 공제급여의 지급
- 2) 공제회의 재정 지원
-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 4)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연구·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교육 지원 사업
- 5) 학교폭력 피해 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
- 6) 그 밖의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마. 운용체계

기금운용계획 수립 - 이사회 심의·의결 - 시의회 심의·의결 - 기금운용 집행 - 결산

바. 기금재원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 등

## 2.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계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회수 (전기이월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학교안전공제및 사고예방기금	17,799,658	5,672,590	1,857,286	9,953,547	146,235	170,000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용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치금 (차기이월금)
학교안전공제및 사고예방기금	17,799,658	6,289,040	929,469	395,807	10,185,342

3. 기금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16년도말 조성액 ㉑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2017년도말 조성액 ㉒=㉑+㉓-㉔	증감 ㉕=㉒-㉑	
	수입㉓	지출㉔			
학교안전공제및 사고예방기금	9,953,547	7,846,111	7,614,316	10,185,342	231,795

4.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7년도말 조성액 ㉑	융자금 미회수채권 ㉒	총 조성규모 ㉓=㉑+㉒
합 계	10,185,342	-	10,185,342

II. 기금운용계획 내역

1. 운용총칙

- 회계연도 : 2017년
- 예산구분 : 본예산
- 회계구분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가. 기금설치 개요

- 1) 설치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 2) 설치목적 :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공제급여의 충당
- 3) 설치년도 : 2007년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보호기능 강화

2)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

- 공제급여의 지급,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연구·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교육지원
-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

다.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16년도말 조성액 <sup>㉑</sup>	2017년도 조성계획			2017년도 말 조성액 <sup>㉒</sup> = <sup>㉓</sup> + <sup>㉑</sup>	비고
	수입 <sup>㉓</sup>	지출 <sup>㉔</sup>	증감 <sup>㉕</sup> = <sup>㉓</sup> - <sup>㉔</sup>		
9,953,547	7,846,111	7,614,316	231,795	10,185,342	
계				10,185,342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천원)

2017년도 말 조성액 <sup>㉑</sup>	응자금 미회수채권 <sup>㉒</sup>	총 조성규모 <sup>㉓</sup> = <sup>㉑</sup> + <sup>㉒</sup>
10,185,342	0	10,185,342

2) 재원조성

-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 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 등

3) 지원기준

- 요양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
- 장해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
-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

- 유족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
- 장 의 비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일분
- ※ 학교폭력은 요양급여만 해당함

4) 지원대상

- 학교안전사고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 학교폭력사고 : 피해학생

2. 자금운용계획

가.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7,799,658	15,711,639	2,088,019	합 계	17,799,658	15,711,639	2,088,019
전입금	5,672,590	5,752,113	△79,523	비용자성사업비	6,289,040	8,103,609	△1,814,569
보조금	1,857,286	12,349	1,844,937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929,469	813,541	115,928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395,807	441,304	△45,497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전기이월금)	9,953,547	9,643,547	310,000	예치금 (차기이월금)	10,185,342	6,353,185	3,832,157
이자수입	146,235	139,630	6,605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170,000	164,000	6,000	기타지출			

※ 비용자성사업비: 사업비 +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비 + 학교폭력피해지원비

※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 일반운영비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산출내역
200세외수입	5,988,825	6,055,743	100,662	
210경상적세외수입	266,235	259,630	6,605	
214사업수입	120,000	120,000	0	
214-09기타사업수입	120,000	120,000	0	
				○ 소방사업이익금 120,000,000원
216이자수입	146,235	139,630	6,605	
216-01공공예금이자수입	146,235	139,630	6,605	
				○ 이자수입 124,841,070원 - 보통예금이자 200,000원 - 단기운용이자 9,460,000원 - 정기예금이자 96,899,070원 - 법인세환급금 18,282,000원 ○ 학교폭력피해지원금 이자수입 - 예금이자 21,393,930원
220임시적세외수입	5,722,590	5,796,113	△73,523	
222부담금	5,672,590	5,692,113	△19,523	
222-02일반부담금	5,672,590	5,692,113	△19,523	
				○ 공제료수입 5,672,589,800원 - 유치원 1,940원 × 91,026명 = 176,590,440원 - 초등학교 3,370원 × 434,731명 = 1,465,043,470원 - 중학교 6,840원 × 233,461명 = 1,596,873,240원 - 고등학교 8,510원 × 273,359명 = 2,326,285,090원 - 특수, 평생, 각종, 외국인, 방통고 등 5,160원 × 20,891명 = 107,797,560원
224기타수입	50,000	104,000	△54,000	

(단위 : 천원)

장 · 관 · 항 ·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산출내역
	224-05기부금	0	60,000	△60,000	
					○ 교육청 교육금고약정기간 만료
	224-06기타잡수입	50,000	44,000	6,000	
					○ 학교폭력구상금 50,000,000원
500 보조금		1,857,286	12,349	1,844,937	
520 보조금		1,857,286	12,349	1,844,937	
521 보조금		1,857,286	12,349	1,844,937	
521-01 보조금		1,857,286	12,349	1,844,937	○ 공제급여 지원금 1,672,000,000원
					○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17,706,000원
					○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금 167,580,000원
700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953,547	9,643,547	310,000	
714예치금회수		9,953,547	9,643,547	310,000	
714예치금회수		9,953,547	9,643,547	310,000	
714-01예치금회수		9,953,547	9,643,547	310,000	
					○ 전년도이월금 7,800,000,000원
					○ 임차보증금 563,547,500원
					○ 학교폭력지원기금 전년도이월금 1,590,000,000원
수 입 합 계		17,799,658	15,711,639	2,088,019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17,799,658	15,711,639	2,088,019
유아및초중등교육		17,799,658	15,711,639	2,088,019
사업비		6,001,000	7,994,649	△1,993,649
공제사업비		5,793,200	7,766,149	△1,972,949
공제급여		5,617,000	7,620,349	△2,003,349
307 민간이전		5,617,000	7,620,349	△2,003,349
05 민간위탁금		5,617,000	7,620,349	△2,003,349
○ 공제급여 5,617,000,000원				
- 요양급여 310,000원 × 12,500건 = 3,875,000,000원				
- 장해급여 52,000,000원 × 16건 = 832,000,000원				
- 간병급여 15,000,000원 × 2건 = 30,000,000원				
- 유족급여 420,000,000원 × 2건 = 840,000,000원				
- 위로금 40,000,000원 × 1건 = 40,000,000원				
소송 및 의료자문료		145,800	145,800	0
301 일반보상금		145,800	145,800	0
11 기타보상금		145,800	145,800	0
○ 소송 및 의료 자문료 145,800,000원				
- 손해방지경감비용, 변호사선임료 2,000,000원 × 5건 × 12월 = 120,000,000원				
- 송무활동비 50,000원 × 2명 × 5건 × 12월 = 6,000,000원				
- 공제급여 관련 법률, 의료, 손해사정자문 등 330,000원 × 5건 × 12월 = 19,800,000원				
보상심사위원회		30,400	0	30,400
301 일반보상금		30,400	0	30,400
09 행사실비보상금		30,400	0	30,400
○ 보상심사위원회 30,400,000원				
- 참석일비 200,000원 × 15명 × 8회 = 24,000,000원		30,400	0	30,400
- 회의경비 500,000원 × 8회 = 4,000,000원				
- 공제급여 관련 법률, 의료, 손해사정자문 등				

(단위 : 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300,000원 × 8회 = 2,400,000원						
예방사업비				207,800	228,500	△20,700
예방사업비				207,800	228,500	△20,700
307 민간이전				207,800	228,500	△20,700
05 민간위탁금				207,800	228,500	△20,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사업비 207,800,000원</li> <li>- 학교안전사고 예방 컨설팅 300,000원 × 4개교 × 12회 = 14,400,000원</li> <li>- 학교안전공제제도 안내 350원 × 170,000부 = 59,500,000원</li> <li>- 교육청 연계 안전사고 예방사업 10,000,000원 × 3회 = 30,000,000원</li> <li>- 언론사 홍보, 공제회 사업 및 기관홍보 12,000,000원 × 4회 = 48,000,000원</li> <li>- 공제급여 학교폭력피해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15,000,000원 × 2회 = 30,000,000원</li> <li>- 공제회 규정집 및 법규집 제작 29,000원 × 100부 = 2,900,000원</li> <li>- 학교안전매뉴얼 제작배포 10,000원 × 600개교 × 3부 = 18,000,000원</li> <li>- 여행자공제사업 1,250,000원 × 4분기 = 5,000,000원</li> </ul>						
기관운영비				1,325,276	1,254,845	70,431
인건비				929,469	813,541	115,928
급여				789,733	679,891	109,842
101 인건비				789,733	679,891	109,842
01보수				789,733	679,891	109,8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급 392,281,320원</li> <li>- 3급 : 5,515,830원 × 1명 × 12월 = 66,189,960원</li> <li>- 5급 : 3,582,140원 × 1명 × 12월 = 42,985,680원</li> <li>- 6급 : 3,606,750원 × 2명 × 12월 = 86,562,000원</li> <li>- 7급 : 2,906,590원 × 2명 × 12월 = 69,758,160원</li> <li>- 8급 : 1,838,400원 × 3명 × 12월 = 66,182,400원</li> <li>- 9급 : 1,683,420원 × 3명 × 12월 = 60,603,120원</li> <li>○ 정근수당 32,690,110원 × 0.5 × 2회 = 32,690,110원</li> <li>○ 명절휴가비 32,690,110원 × 0.6 × 2회 = 39,228,130원</li> </ul>						

(단위 : 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 정액급식비 130,000원 × 12명 × 12월 = 18,720,000원			
	○ 가족수당 80,000원 × 6명 × 12월 = 5,760,000원			
	○ 정근수당가산금 100,000원 × 11명 × 12월 = 13,200,000원			
	○ 대우수당 3,925,860원 × 0.041 × 12월 = 1,931,520원			
	○ 연차수당 209,730원 × 8명 × 18일 = 30,201,120원			
	○ 관리업무수당 5,515,830원 × 0.09 × 12월 = 5,957,090원			
	○ 직급보조비 23,640,000원 - 3급 : 500,000원 × 1명 × 12월 = 6,000,000원 - 5급 : 250,000원 × 1명 × 12월 = 3,000,000원 - 6급 : 155,000원 × 2명 × 12월 = 3,720,000원 - 7급 : 140,000원 × 2명 × 12월 = 3,360,000원 - 8·9급 : 105,000원 × 6명 × 12월 = 7,560,000원			
	○ 퇴직연금 17,843,633원 × 12명 = 214,123,590원			
	○ 일용직임금 50,000원 × 2명 × 10일 × 12월 = 12,000,000원			
	수당	139,736	133,650	6,086
	101 인건비	139,736	133,650	6,086
	01보수	139,736	133,650	6,086
	○ 연장근로수당 58,141,800원 - 5급 : 24,160원 × 1.5 × 18시간 × 1명 × 12월 = 7,827,840원 - 6급 : 24,800원 × 1.5 × 18시간 × 2명 × 12월 = 16,070,400원 - 7급 : 19,170원 × 1.5 × 18시간 × 2명 × 12월 = 12,422,160원 - 8급 : 12,290원 × 1.5 × 18시간 × 3명 × 12월 = 11,945,880원 - 9급 : 10,160원 × 1.5 × 18시간 × 3명 × 12월 = 9,875,520원			
	○ 이사장업무수당 500,000원 × 12월 = 6,000,000원			
	○ 특수업무수당 80,000원 × 11명 × 12월 = 10,560,000원			

(단위 : 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직수당 5,28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 장 : 100,000원 × 2명 × 12월 = 2,400,000원</li> <li>- 팀·차장 : 60,000원 × 4명 × 12월 = 2,880,000원</li> </ul> </li> <li>○ 성과급 4,979,570원 × 12명 = 59,754,840원</li> </ul>			
	업무추진비	30,000	30,000	0
	업무추진비	30,000	30,000	0
	203 업무추진비	30,000	30,000	0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00	30,000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추진비 30,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사 장 : 700,000원 × 12월 = 8,400,000원</li> <li>- 사무국장 : 600,000원 × 12월 = 7,200,000원</li> <li>-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200,000원 × 12월 = 14,400,000원</li> </ul> </li> </ul>			
	일반운영비	365,807	411,304	△45,497
	일반운영비	365,807	411,304	△45,497
	201 일반운영비	341,807	390,904	△49,097
	01 사무관리비	280,807	329,904	△49,0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국운영관련비용 280,807,230원</li> <li>○ 통신비 31,14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문구독 15,000원 × 3부 × 12월 = 540,000원</li> <li>- 전 화 500,000원 × 12월 = 6,000,000원</li> <li>- 인 터 넷 550,000원 × 12월 = 6,600,000원</li> <li>- 우 편 료 1,500,000원 × 12월 = 18,000,000원</li> </ul> </li> <li>○ 자산취득비 15,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본체 1,500,000원 × 5대 = 7,500,000원</li> <li>- 모 니 터 300,000원 × 5대 = 1,500,000원</li> <li>- 프 린 터 500,000원 × 2대 = 1,000,000원</li> <li>- 사무용가구 500,000원 × 10대 = 5,000,000원 (책상, 의자, 캐비닛 등)</li> </ul> </li> <li>○ 인쇄비 100,000원 × 12월 = 1,200,000원</li> <li>○ 특근매식비 7,000원 × 6명 × 15일 × 12월 = 7,560,000원</li> <li>○ 업무(법률, 의료, 노무)관련 자문료 330,000원 × 3명 × 12월 = 11,880,000원</li> <li>○ 4대보험사업주부담금 64,759,23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 56,536,000원 × 3.06% × 12월 = 20,760,010원</li> <li>- 장기요양</li> </ul> </li> </ul>			

(단위 : 천원)

조직 · 부문 · 정책 · 단위 · 세부사업 · 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p>56,536,000원 × 3.06% × 6.55% × 12월 = 1,359,780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금보험 56,536,000원 × 4.5% × 12월 = 30,529,440원</li><li>- 고용보험 56,536,000원 × 0.9% × 12월 = 6,105,880원</li><li>- 산재보험 56,536,000원 × 0.885% × 12월 = 6,004,120원</li><li>○ 맞춤형복지포인트 681,500원 × 12명 × 2회 = 16,356,000원</li><li>○ 직원교육훈련비 8,200,000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보험·의료 연수 500,000원 × 4명 × 2회 = 4,000,000원</li><li>- 중부권직원연수 100,000원 × 6명 × 4회 = 2,400,000원</li><li>- 중앙회직무연수 100,000원 × 6명 × 3회 = 1,800,000원</li></ul></li><li>○ 직원체육행사경비 100,000원 × 12명 × 2회 = 2,400,000원</li><li>○ 지급임차료 73,872,000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무실 임차료 1,100,000원 × 12월 = 13,200,000원</li><li>- 사무실 관리비 4,000,000원 × 12월 = 48,000,000원</li><li>- 복합기 임차료 165,000원 × 12월 = 1,980,000원</li><li>- 업무용차량렌트 676,000원 × 12월 = 8,112,000원</li><li>- 공기청정기렌탈 31,000원 × 5대 × 12월 = 1,860,000원</li><li>- 정 수 기 렌 탈 60,000원 × 1대 × 12월 = 720,000원</li></ul></li><li>○ 지급수수료 9,840,000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세 무 기장수수료 400,000원 × 12월 = 4,800,000원</li><li>- 홈페이지유지보수 200,000원 × 12월 = 2,400,000원</li><li>- 전산통신유지보수 170,000원 × 12월 = 2,040,000원</li><li>- 회계프로그램유지보수 50,000원 × 12월 = 600,000원</li></ul></li><li>○ 시설장비유지관리비 300,000원 × 12월 = 3,600,000원</li><li>○ 홈페이지 고도화 비용 11,000,000원 × 1회 = 11,000,000원</li><li>○ 잡비(청소, 사무용품, 탕비실물품 등) 600,000원 × 12월 = 7,200,000원</li><li>○ 이사회 등 회의비 16,800,000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참석수당 200,000원 × 17명 × 4회 = 13,600,000원</li><li>- 회의경비 500,000원 × 4회 = 2,000,000원</li><li>- 회의록속기비용</li></ul></li></ul>			



(단위 : 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300,000원 × 4회 = 1,200,000원						
02 공공운영비				61,000	61,000	0
○ 중앙회 분담금 61,000,000원						
202 여비				24,000	20,400	3,600
01 국내여비				24,000	20,400	3,600
○ 근무지내·외 출장여비 24,000,000원						
- 관내출장비						
20,000원 × 6명 × 10회 × 12월 = 14,400,000원						
- 관외출장비						
200,000원 × 2명 × 2회 × 12월 = 9,600,000원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비				167,580	0	167,580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비				167,580	0	167,580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비				167,580	0	167,580
307 민간이전				167,580	0	167,580
05 민간위탁금				167,580	0	167,580
○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비용						
1,156,000원 × 10건 × 12월 = 138,720,000원						
○ 상담자문위원회 14,340,000원						
- 참석수당						
200,000원 × 7명 × 6회 = 8,400,000원						
- 회의경비						
490,000원 × 6회 = 2,940,000원						
- 자료제작·회의록속기비용						
500,000원 × 6회 = 3,000,000원						
○ 법률 및 의료자문						
330,000원 × 2회 × 12월 = 7,920,000원						
○ 상담지원제도 홍보						
1,650,000원 × 4회 = 6,600,000원						
학교폭력피해지원				120,460	108,960	11,500
학교폭력피해지원				120,460	108,960	11,500
학교폭력피해지원				120,460	108,960	11,500
301 일반보상금				120,460	108,960	11,500
11 기타보상금				120,460	108,960	11,500
○ 학교폭력피해지원비 120,460,000원						
- 심리상담 비용						
1,000,000원 × 50건 = 50,000,000원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비용						
1,000,000원 × 50건 = 50,000,000원						
- 구상권행사경비						
1,650,000원 × 10회 = 16,500,000원						
- 법률자문료						
330,000원 × 1회 × 12월 = 3,960,000원						

(단위 : 천원)

조직 · 부문 · 정책 · 단위 · 세부사업 · 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차기 이월금	10,185,342	6,353,185	3,832,157
	차기 이월금	10,185,342	6,353,185	3,832,157
	차기 이월금	10,185,342	6,353,185	3,832,157
	602 예치금	10,185,342	6,353,185	3,832,157
	01 예치금	10,185,342	6,353,185	3,832,157
	○ 차기이월금	8,644,407,620원		
	- 이월금	8,080,860,120원		
	- 임차보증금	563,547,500원		
	○ 학교폭력피해지원비	1,540,933,930원		
	- 차기이월금	1,540,933,930원		
<b>지출합계</b>		<b>17,799,658</b>	<b>15,711,639</b>	<b>2,088,019</b>

###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①-②
	계①	전입금	보조금	공제료 수입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②	공제-예방 및 상담 지원비	학교 폭력 지원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 비	차입 금 원리 금 상환	예수 금 원리 금 상환	기 타 지 출	
~2006년 까지	44,468	9,307		23,014			12,147		29,378	25,495		3,883				15,090
2007	2,990	42		2,220			728		3,765	3,180		585				-775
2008	2,988	30		2,191			647	120	3,149	2,511		638				-161
2009	3,947	30		3,201			596	120	3,496	2,809		687				451
2010	4,402	30		3,652			600	120	3,905	3,132		773				497
2011	4,245	30		3,518			577	120	4,709	3,795		914				-464
2012	6,145	30	1,668	3,710			617	120	5,679	4,441	71	1,167				466
2013	4,858	60		3,895	52		731	120	7,512	6,104	70	1,338				-2,654
2014	5,543			4,744	53		626	120	7,963	6,624	92	1,247				-2,420
2015	6,123	60	175	5,445	62		261	120	6,124	4,930	88	1,106				-1
2016	6,067	60	12	5,692			139	164	9,358	7,620	109	1,629				-3,291
2017	7,846		1,857	5,673			146	170	7,614	6,169	120	1,325				232
계	99,622	9,679	3,712	66,955	167		17,815	1,294	92,652	76,810	550	15,292				6,970

\* 2016년, 2017년도는 예산액 기준임

###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5년도말 현재액	2016년도말 현재액①	2017년도말 현재액②	증 감 (②-①)	
합계		10,029,382	6,353,185	10,185,342	3,832,157	
	우리은행	1,700,000	1,000,000	1,000,000	0	
	농협은행	7,765,835	4,789,638	8,621,795	3,832,157	
	임차보증금	563,547	563,547	563,547	0	

\* 2016년, 2017년도는 예산액 기준임